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자	2019.07.18.(목)
평의원정원 : 11명	출석평의원 : 11명

1. 회의일시 : 2019년 7월 25일(목), 11시 30분
2. 회의장소 : 솔브릿지 국제대학 1층 회의실
3. 평의원출·결 현황 : 출석 11명, 불참 0명
 - 가. 출석의원 : 송도선(의장), 이광익(부의장), 전지은(학생대표)
민상기, 박찬수, 남우현, 권영민, 이원봉, 오옥석, 이양훈, 신인동
 - 나. 불참의원 : 없음
4. 회의안건 : 우송정보대학 학칙 일부 개정(안) 심의
5. 기타참석인원 : 서태정(부총장), 이상혁(기획처장), 김병렬(교무팀장), 이정민(기획팀장)
6. 회의내용 :

의장(송도선) : 그럼, 지금부터 우송정보대학 대학평의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팀장(이정민) : 대학평의원회규정 제7조에 의거 재적의원 11명 중 11명 전원 참석으로 회의가 성원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과 안건 설명을 위해 서태정부총장, 이상혁기획처장, 김병렬교무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의장(송도선) : 대학평의원회가 성원되었으므로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의 안건인 우송정보대학 학칙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렬 교무팀장, 남우현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팀장(김병렬) : 교무팀장 김병렬입니다. 우송정보대학 학칙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제24조(교과이수 및 학점취득)는 군 복무중인 휴학생이 원격수업 등 수강 시 고등교육법 제23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병역법 73조에 따라 학기당 6학점, 연간 12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27조(성적)은 성적평가 기간 중 성적평가 불가시 1등급을 부여하여 성적평가를 보류한 후 보류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성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1조의4(졸업의 유예)는 졸업기준 충족자에 대한 졸업을 유예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졸업학점을 82학점에서 72학점으로 조정하면서 아동보육과, 사회복지과와 같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78학점을 수강해야하는 학과에 대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방법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우현의원 : 대학의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등 대학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이 2011년에 개정되었으며 오늘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대학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교원에 강사를 포함하고 이에 따른 임용 및 신분보장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개선되는 강사제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으로 임용하며, 재임용 절차를 거쳐 3년의 임용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불체포특권,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교원소청심사청구권 등 전임교원으로서의 지위도 부여하게 되어 있으며, 개학 전 준비과정 및 방학후 성적부여기간에 대한 임금도 지불해야만 합니다.

학칙에는 강사를 교원으로 구분하고 임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규정과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장(송도선) : 김병렬 교무팀장과 남우현 의원께서 설명하신 우송정보대학 학칙 개정(안)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상기의원 : 연간 12학점을 모두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교무팀장(김병렬) : 군입대 복무 중에 온라인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통신전공 학생이 군복무중 자운대에서 통신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획득하였다면 학과(부)심의위원회,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검토를 하고 교무위원회 승인을 통해 학기당 6학점 이내 연간 최대 12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상기의원 : 학점 인정 과목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교양교과목 혹은 인성교과목에 한해서 학점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교무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신인동의원 : 민상기의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한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군복무 중 관련 학칙 내용을 학점을 취득하고 학교에 제출했는데 심의에서 부결되었을 때 학생입장에서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오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무팀장(김병렬) : 특정교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 상위법과 충돌될 수 있고 판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62 7 0 7 1 2 0 2

박찬수의원 : 자격증 취득도 학점인정이 가능한가요?

교무팀장(김병렬) :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인 경우 학점인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양훈의원 : 온라인 강좌 교육비는 어떻게 지불되나요?

교무팀장(김병렬) : 군복무중인 학생이 원격강좌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수강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국방부에서 지원됩니다.

이양훈의원 : 학생이 복학한 후 이수해야할 학점이 3학점인 경우 등록금을 전액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교무팀장(김병렬) : 등록금은 학기당 납부하는 것으로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업년한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만 학점당 납부할 수 있습니다.

12학점은 학생이 다양한 수업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지은의원 : 그럼 12학점이 졸업학점에 포함이 되면 전공수업 학점을 적게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교무팀장(김병렬) : 전공은 반드시 40학점을 이수해야하기 때문에 12학점이 전공필수학점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이양훈의원 : 인정의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부총장(서태정) : 참고로 우리대학은 무조건 4학기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과 같이 사전에 이미 학점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트렌드가 평생 교육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24조는 제외시킬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학칙 개정(안)과 같이 이를 심의하는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이정민) : 학칙 개정(안) 제24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정비내용을 다음 회차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송도선) : 제27조 규정내용은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해당될 수 있어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현장실습시기에 성적평가기간이 겹치게 된 경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무팀장(김병렬) : 현장실습 학생은 물론 일부 학과의 경우 해외교육기관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성적기간 중 성적평가가 불가시 성적평가를 보류해주는 사항입니다.

박찬수의원 : 졸업유예를 할 경우 유예기간이 있나요?

교무팀장(김병렬) : 유예기간은 졸업예정일로부터 한 학기 이내로 하며 유예신청은 총 2학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학칙 개정(안) 심의 통과되면 관련 졸업유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운영규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박찬수의원 : 학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필요과목이 희망하는 학기에 개설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양훈의원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 취득의 유예)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칙 개정도 “졸업의유예”를 “학위취득의 유예”로 하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교무팀장(김병렬) : 우리 대학 학칙 제31조(졸업 및 수료) 조항에 대한 유예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어서 “졸업의 유예”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이양훈의원 : 과용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승인시 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는 세칙내용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무팀장(김병렬) : 학칙 개정안의 의미는 균휴학 한 학생이 군복무 중 원격수업으로 이수한 학점을 복학 후 인정하는 제도이며, 학기 및 연간 한도 학점은 군복무 기간이 아닌 대학의 학사일정을 의미하므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량의 학점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의견처럼 심의 절차 및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연동의원 : 제50조에 대해서는 강사의 강의한정시간도 따로 정해져있나요?

남우현의원 : 강사는 매주 6시간 이하의 교과목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총장이 교과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의장(송도선) : 여러 의원님께서 우송정보대학 학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많은 의견과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의견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 (다른의견 없음)

의장(송도선) :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우송정보대학 학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거수로 찬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찬성하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전원 : (참석의원 전원 손을 들어 찬성의사를 포함)

의장(송도선) :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우송정보대학 학칙 일부 개정(안)이 참석의원 모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학사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학평의원회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기록할 것이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장을 포함한 이광익부의장, 박찬수의원, 권영민의원 4명을 대표서명자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 이의 없습니다.

의장(송도선) :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대학평의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종료하다)

122~

7 " > | 니 갠 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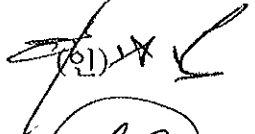
의 장

송 도 선



부 의 장

이 광 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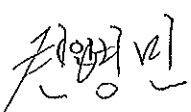
평 의 원

박 찬 수



평 의 원

권 영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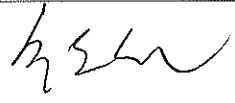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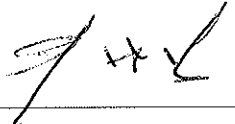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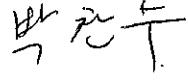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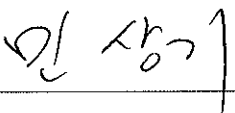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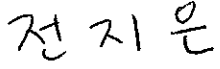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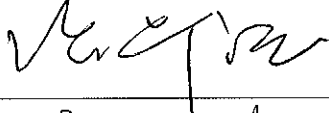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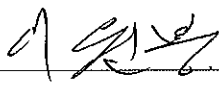


2019. 07. 25.

우송정보대학 대학평의원회

대학평의원회 참석의원 서명부

일시 : 2019.07.25.(목), 11:30

장소 : 솔브릿지 1층 회의실

순	구분	성명	서명	비고
1	의 장	송도선		
2	부의장	이광익		
3	평의원	박찬수		
4	평의원	민상기		
5	평의원	전지은		
6	평의원	남우현		
7	평의원	권영민		
8	평의원	이원봉		
9	평의원	오옥석		
10	평의원	신연동		
11	평의원	이양훈	